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13.

발의자 : 정춘숙 · 백혜련 · 김상희  
강병원 · 남인순 · 김정우  
원혜영 · 박남춘 · 유은혜  
박정 · 박찬대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,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영 · 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· 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 ·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 ·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4조의2, 제24조, 제37조).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또는 도형”을 “· 도형 또는 그림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영 · 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) ① 제조판매업자는 영 · 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· 광고 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“제품별 안전성 자료”라 한다)를 작성 및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
2.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
3. 제품의 효능 ·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
4. 그 밖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, 소비자 사용실태,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 등을 안전

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영·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·광고의 범위,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·공개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, 시기,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
제37조제1항 중 “제9조”를 “제4조의2, 제9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표시”란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하는 문자·숫자 <u>또는 도형</u>을 말한다.</p> <p>9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표시”란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하는 문자·숫자 <u>도형 또는 그림 등을</u> 말한다.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의2(영·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)</u> ① 제조판매업자는 영·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·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“제품별 안전성 자료”라 한다)를 작성 및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</p> <p>2.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</p> <p>3. 제품의 효능·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</p> <p>4. 그 밖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</p>

제24조(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)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을 취소하거나, 품목의 제조·수 입 및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, 소비자 사용실태,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영·유아 또 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·광 고의 범위, 제품별 안전성 자료 의 작성·공개 범위 및 보관기 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, 시기,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  
조 정지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